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2. 26.(목) 14:39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9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및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정책국,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소관 안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용자정책국 각국별 안건이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이 섞여 있습니다. <의결안건>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고 국별로 <의결안건>, <보고안건>이 섞일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65-315 ~ 32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는 ‘(주)한컴모빌리티, (주)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주)피유엠피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의 내용은 상자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 및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허가신청 공고·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심사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세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허가신청을 한 업체는 6개로서 (주)한컴모빌리티, (주)비트링크, (주)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에스케이인포섹(주), (주)피유엠피 총 6개 법인이 개인정보위치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중 2개 법인이 탈락하여 4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은 각 사항에 대해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 판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주)한컴모빌리티, (주)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주)피유엠피 총 4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나머지 2개 업체인 (주)비트링크, 에스케이인포섹(주)은 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허가결과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올해 마지막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안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자로서 타당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과 관리능력이 부실한 2개 사업체에 대해 신규 허가를 거부한 전문가 심사의견을 존중해서 원안 접수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을 보면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지적되었습니다. 차량위치정보를 활용한 주차서비스 제공사업자인 한컴모빌리티의 경우에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 이슈가 제기됐었고,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하는 접근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위치를 통해 개인의 운동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민코리아도 위치정보 관리자와 취급자의 권한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는 오늘 심사의견 의결 후에 신청법인의 소요설비와 투자계획, 그리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계획,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혁신서비스가 아니라 매년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미 다수 허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오히려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관련 산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또한 일자리나 혁신적인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공모해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더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에스케이인포섹을 보니까 다른 신청법인들은 직원이 7~8명, 또 20여명, 40명에 불과한데 여기는 1,300명이 넘습니다. 자산도 1,800억원이 넘고 대규모 기업입니다. 2000년부터 한 19년 사업을 해온 업체인데 여기가 부적격 판단을 받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주된 이유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부실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대규모 기업이고 직원 수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계획을...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담당하는 직원 배정이 적게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부실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의 부실함에 대해 계속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2000년부터 쪽 사업을 해 오던 이 업체가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개인정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취소되었다는 것이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허가 심사가 4~5차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보완하면 충분히 다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저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 의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국내·외 사업자, 대·중소 인터넷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계약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경과 부분은 '18년 11월부터 과기정통부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19년 7월 초안을 마련하고, '19년 11월 수정안을 통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12월에 공청회 개최 및 사업자·시민단체 등 추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총 5개 장, 14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 제4조는 이용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비차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서면 계약의 원칙, 그리고 쉽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 내용만을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제8조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통신사업자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필수적이나,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콘텐츠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 CP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역차별을 가중시키고, 망 이용 대가를 전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해 의미가 있다는 입장,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사업자와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제정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먼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 애를 쓴 사무처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안건은 사업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당초 원안을 대폭 완화해서 현재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터넷망 이용대가는 트래픽과 콘텐츠 경쟁력,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 분담 구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해서 망 이용 대가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의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콘텐츠파워를 내세워서 사실상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쓰는 외국 CP들에 대해 성실한 협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이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합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망 이슈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구속력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차이가 큼니다. 국내 CP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와 같은 중소 CP 등을 옥죄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CP가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 무조건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그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국내 CP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P 업계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대가를 좀 더 구체화하고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의무 부분까지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언론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방통위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현실을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LTE 기준으로 인터넷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의하면 CP 망 이용대가가 포함된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11년 5,705억원에서 2017년에는 4,05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투자를 했던 인터넷의 초기 상황과 달리 현재는 민간 ISP 사업자들이 인터넷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망이 공적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적인 투자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법령을 통한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 이용대가의 협의

과정에서 해외 CP들이 그동안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내세워서 국내 ISP와의 협상을 질질 끌거나 아예 무시하기까지 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시장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내 CP와 ISP 사업자 간 분쟁은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의 한계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상황 파악력과 중립적인 자세,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향후 세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부위원장

- 허 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보태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이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또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주된 목적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글로벌 CP들이 망 이용대가 역차별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미흡하게나마 그래도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다만, 국내 CP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내 CP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 CP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글로벌 CP에 대한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콘텐츠 제공사업자 CP들이 반발하는 것이 망 관리는 통신사들 몫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의무를 부여하느냐, 시장 개입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전에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을 할 때는 통신사와 '협의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로 완화하고 그 경우에도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시켰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CP 반발을 잘 무마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나가고, 또 글로벌 CP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사업자들 대표들의 의견청취도 했지만 콘텐츠사업자들이 특히 제기하는 우려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현장



에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절묘하게 절충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보칙에 앞으로 시행되는 때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초창기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겠다는 하나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3년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규범적 효력을 가져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시고, 해외 사업자의 집행력 문제도 좀 더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무처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 (2019-65-32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변경허가를 의결한다. 변경허가 조건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 권고사항입니다.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 교통 FM의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의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허가 대상 법인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허가 대상 사업자 분할 전·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인분할 후 회사명은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서울특별시 출연금 의존을 경감을 위해 교통 FM의 방송광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tbs는 2017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독립법인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및 심사의견입니다. 법인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위원인 점을 감안하여 변경허가를 요청한 재단법인 설립과 교통 FM 상업광고 허가 신청 사항을 중점심사하였고, 중점심사 사항 이외의 사항은 차후 재허가 심사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변경허가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 중 736.50점을 획득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변경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인 분할 이후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관련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하므로,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조치사항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변경허가 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업광고는 공공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고,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아 변경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변경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허가 조건(안)은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입니다. 권고안은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말 법인분할 승인통보 및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의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법인분할과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재원 안정성 관련 사안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tbs는 언론 기능을 지닌 방송사이지만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나 재단 이사회 구성 등에 있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했고, 따라서 독립법인화 추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교통방송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고, 방통위가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전반 외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하도록 변경허가 조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원의 독립과 교통 FM의 상업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tbs가 현재 연간 예산 약 440억원 가운데 서울시 전입금이 375억원이고, 협찬과 기타수익을 고려할 때 상업광고 허용이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tbs FM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되, 독립법인 전환 이후의 운영과 성과, 미디어 환경과 방송제도의 변화, 방송광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로 재단의 재정운영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붙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심사하신 허 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통방송이 이렇게 별도 법인화 되는 것은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방송을 운영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지배구조가 담보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광고 문제는 변경허가를 심사하신 심사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방송의 광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면밀히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결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에 tbs 서울시 교통방송이 독립법인으로 다시 발족하게 된, 재단이 분리된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방송의 독립성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 선거에서 선출된 선출직 서울시장의 거의 사유화 방송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국회에서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아서 차라리 재단으로 독립을 시켜서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시키자는 취지로 이 법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독립을 심사를 할 때 우리가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공정성 부분의 배점까지 더 높여서 지난 기본계획을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은 결과, 물론 730 몇 점이 나왔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연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편파방송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말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방송 법인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법인이 분할되어서 방송 법인으로 독립은 되지만 성격으로 보면 tbs 방송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지위라고 할까요? 산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방송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 산하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광고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데 과연 독립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 출근길 시민들이 많이 듣는 청취율 1위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그동안 수차례 편파방송이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몹시 편중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 균형감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계속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변경허가 조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제시할 것, 또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당초의 허가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 그래서 모두 이 2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허가를 받은 즉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 6개월이 아니고 당초 심사과정에서 3개월로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6개월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개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빨리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6개월간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편향방송이라는 지적받는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안을 받아서 우리 감독 하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을 3개월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변경허가 조건 중 '변경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 초안에는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 과연 독립적으로 하려면 실무적으로는 우리들과 이야기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또 다시 하기 쉽지 않고, 또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더라도 6개월까지 빠듯하게 빨리 움직여야 가능한 사항이지, 3개월 같으면 실제로 또 줄속으로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가 원하는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6개월이 되더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6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을 상정했습니다. 논의하셔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 김석진 부위원장

- 다른 위원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 허욱 상임위원

- 서울시 조례 절차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tbs측으로부터 몇몇 가지 사안들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tbs가 방통위의 변경허가 결과에 대해 다시 시의회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그 이후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는 6개월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절차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6개월로 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독립법인이 되면 교통방송법인이 어디까지 어떻게 심사를 받게 되는지, 지금은 서울시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이 두 군데 모두 집행부와 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아래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산하기구라는 성격은 벗어나지 못하지만 앞으로 법인이 독립하게 되면 감독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국회도 역시 감독을 받는 것이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회 감독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 독립됨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 **허 욱 상임위원**

- 제가 잠깐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것이 서울시 산하의 출자·출연법인으로 독립화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사업소 성격이었는데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서 출자·출자기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심사를 서울시의회로부터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변경 허가를 받아서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방통위의 국정감사나 다양한 방식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사회의 이사장이 아니라 tbs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표 이사가 국회에 출석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잠깐 의견을 보태고 싶은 것이 이것이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가 서울시로부터 재원의 거의 전부를 받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결주문 두 번째 항목에 FM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추후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 재검토를 구체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위원님들,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뭔가 구체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추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독립 요구를 계속 하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을 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교통방송은 지상파입니다. 지상파에 별도 광고를 새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업자에게 굉장히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반국에서 광고제도 개편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합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안에'라든지 이런 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제도 개편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생각이 같은데 시한을 이렇게 두면 1년 이내라거나 1년 뒤에 검토한다거나 이런 시한을 두면 마치 그 이후에는 광고영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맞춰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을 하는 법인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비할 것이고, 또 다른 타 매체들, 지상파 다른 방송 매체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한은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아마 의견을 낼 것입니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지고 독립이 실현이 안 되고 또 많은 지적들을 받으면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검토해서 기안을 해서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한은 오히려 더 얽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대호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독립하라고 하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공염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안건으로 제시한 것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면 tbs 쪽에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과 그다음에 재정 독립 문제가 엮여서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 문제도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해서 우리가 결국은 풀어가야 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당초에 1년 정도 이후에 재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1년 후에 tbs 재허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허가 심사 때 상업광고 허용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재허가 심사의 쟁점이 흐려지고 오히려 상업광고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법인 전환 이후 운영성과 내용을 보고, 필요시에 추진하고 아예 불허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방송광고 제도 상황 전반 운영성과를 보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tbs에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향후 발전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길어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오늘 의결로 교통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서울시 사업소 조직의 관료적인 운영행태에서 벗어나서 지역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송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tbs 독립법인화의 목적이 진정으로 무엇이었고, 어떤 정체성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응축된 가치체계 정립과 더불어서 다양한 시민참여 콘텐츠를 만들고, 또한 시청자의 요구들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G 시대가 열리고 네비게이션과 날씨 앱의 발달로 인해 tbs가 교통기상 전문방송이라는 최초에 가졌던 정체성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통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매개 역할들을 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트로폴리탄 시민 방송으로 나아가는 방안이 숙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은 외국인 방문객이 한 해 1,00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등록된 외국인이 27만명이 넘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글로벌 파워 4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속가능한 TOP10 가운데에서도 취리히와 싱가포르, 스톡홀름, 비엔나,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세계 10위권 국제도시답게 비즈니스 인프라와 문화·예술·관광·교통·주거·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활동과 일자리, 청년과 노인 문제, 시민공동체 현상과 주민자치 등은 어떠한 상황인지, 기후 변화나 재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 짚어볼 아젠다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FM과 영어FM, 케이블텔레비전을 보유한 tbs가 독립법인화 이후 서울시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두루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시민의 신뢰를 얻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재단법인의 독립성 문제와 더불어서 재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봅니다. tbs가 당면과제의 선후를 구분하고 조직 안팎의 지혜를 모아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해서 실현하면 내년 재허가 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역점을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방송은 서울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각 지역별로 11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사실은 운영주체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으로서 별도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이 정책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통위의 정책과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9-65-322)**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 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딜라이브 재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한다’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조건 수정(안) 관련된 내용 중에 PP 의견수렴 절차 담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기부의 PP 평가와 계약 관련된 조건 중에서 <4>번 항목에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경우,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밑의 부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고, 개최 빈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과기부의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 관련 조건 중 <2>번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현재 ‘반기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개최빈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시청자위원회 관련된 <10>번 항목입니다. ‘다만, 시청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그리고 역시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이행 조건과 이행점검 조건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 중에서 <1>번 항목에 있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16>번 항목에 있는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을 <1>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 부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오른쪽 수정(안)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딜라이브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원편에 과기부 재허가조건(안)은 <14>번 항목에 ‘(주)딜라이브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허가 기간 동안 최대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 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재허가 기간 동안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시겠습니다. 전반부는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하 내용을 보시면 ‘재허가 기간 동안 2개 이상 신용평가사로부터의 평가결과가 ‘투자적격’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기부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개별 사유에 대해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딜라이브에 대해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대상사업자 현황입니다. 사업자명은 (주)딜라이브이고, 방송구역은 서울·경기지역의 14개 SO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과기부가 재허가 심사서류를 접수했고, 10월 21일~23일까지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회는 12월 10일~11일까지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과기부의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약심심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률·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허가 신청서 및 과기정통부의 조건(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허가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의결주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PP평가와 계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PP 의견이 반영된 PP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경우에 공문이나 회의록 등 PP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등 관련해서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를 반기가 아닌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성실 이행 조건은 그 자체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으므로, 이행점검 관련 조건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대상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위약금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은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안사항 관련해서는 재무건전성 담보 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점,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수용하여 과거와 달리 부채비율 유지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재허가 기간 동안 2개 이상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결과가 ‘투자적격’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투자 등 영업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과기부가 제시한 재허가 기간 동안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관련된 조건과의 규제 취지가 동일하므로 조건 수정보다는 제안의

형태로 과기부에 보내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심사결과 및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딜라이브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매우 꼼꼼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앞서서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들을 봐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한 방안들을 잘 제시했습니다. 지역채널 운영, PP 프로그램 사용료, 시청자위원회 운영, 공정계약과 협력업체의 상생, 그리고 투자계획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재무적 조건들을 잘 부과해서 방송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도 공익성 측면에서의 심사도 매우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우리 위원회가 딜라이브의 사전심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조건 수정에 PP평가 계약과 관련해 PP의 의견수렴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서 실제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두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채상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과기부 조건에 대해서도 딜라이브의 재무적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매년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지속·유지하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의견을 수용하고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기부에서 넘어올 때 점수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는 재허가 기간이 다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SO 관련해서 특별하게 쟁점사항들이 많지 않아서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뒤에 <표>를 보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유효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5년으로 일률적으로 다 높인 것인지, 아니면 딜라이브만 5년을 준 것인지...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딜라이브가 이번에 14개 구역에서 재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일 빠른 날짜가 4페이지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년 1월 27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외에 조금씩 승인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14개를 한꺼번에 법인별로 심사를 하게 올해부터 바뀌면서 그 부분이 5년으로 통일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700점이 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가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기가 아닌 분기별로 했다는데, 반기나 분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부 방송사를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실무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딜라이브를 제외한 4개 MSO가 전부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나>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위원회 고시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정규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간, 재난의 명칭, 재난이 발생한 지역 등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 재난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영어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해서는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회 보고 후에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재난방송을 운영해 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방송사업자들은 그동안 재난방송 때 텔레비전처럼 하단에 스크롤로 처리할 수 없고, 생방송이든 녹음방송이든 간에 방송을 끊고 들어가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행동요령에 관련된 부분, 또 해당 재난의 경보 관련 기관 관련해서는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종전 라디오방송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TTS로 전환하는, 즉 재난문자가 들어오면 곧바로 그것을 음성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 되었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올해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주에 기능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럼 내년부터는 TTS에 있어서 전부 다 각 라디오방송사들이 적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라디오방송사업자들에 관련된 행동요령 등을 요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한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재난주관방송사가 아닐지라도 사전에 예방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어방송과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무 구현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 안건은 방송사의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규제위 등과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잘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난의 주 매체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제3호 외의 사항은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일부 조정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해당 재난 등과 관련한 행동요령, 그리고 경보 발령기관 2가지입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맞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이 사실은 방송을 끊고 이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일일이 다 하기 어렵다는 이런 사업자들의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방송할 수 있다' 이대로 바꾸더라도 그렇다고 너무 행동요령을 짝둑 잘라버리면 실제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조정한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이번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재난방송 특성을 고려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요청한 문안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는 것에서 조금 완화를 시키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또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데 대해 대단히 사무처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이렇게 하자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표철수 위원님 걱정대로 국민행동요령은 이제 하도 재난 태풍을 많이 겪으니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또 무조건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문안 하나도 못 고치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런 부분이 융통성 있게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특보가 나갈 때 당초에는 고시에 '방송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고시에 강제조항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요. 현행은 재난 방송 요청 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약간의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고시는 위반해도 처분할 수 없지만 의무조항을 해야만 그래도 이나마 지켜진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방송사업자들, 특히 라디오 매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발이 없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너무 강행규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잘 설득시켜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 사유입니다.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면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간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가 4배에 이르는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시행 시기는 '20년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지상파 그리고 종편·보도 등 PP들과 SO·위성 방송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시 가중치 부여 관련 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겠습니다.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평일은 19시~23시, 토·일·공휴일의 경우에는 18시~23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규정은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급 패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주시청 시간대를 정하고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겠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의 주시청시간대는 평일은 11시~15시, 토·일·공휴일의 경우에는 11시~16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또 면제 대상 사업자의 실질적인 비율, 그리고 과태료 감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20억원 미만의 기준은 현행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관련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감경을 해 주고 있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지상파TV와 종편 등 매체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PP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0.05%에서 0.1%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TV와 기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의무편성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별도 제시된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행 시기 관련입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오늘 고시 개정안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월까지 행정예고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까지 규제위 심사,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3월 위원회 의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안건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의 제외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고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시청시간대에 공

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과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격차를 4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으로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을 정한 것은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안)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유료방송사업자는 비대칭 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관련된 고시의 진척사항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니까....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9분 폐회 】